

#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 인증



##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이란?

공단이 인증신청 사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**근로자 건강증진활동\***을 평가하여 우수함을 증명하는 것

## 추진근거

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-6호 (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)

## 근로자 건강증진활동\*

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뇌·심혈관질환 예방, 직무스트레스 관리, 직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, 조직 차원의 생활습관 개선 활동

##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인증업무 흐름도



\* 일선기관(지역본부): 신청서 접수, 인증평가 및 연장심사 실시 \* 본부: 인증심사위원회 운영, 인증결정

## 인증평가에 따른 주요내용

- 제조업(100인 이상, 100인 미만) 및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평가항목별 차등 적용
- 인증평가 주요내용

| 인증평가 주요내용 |  |
|-----------|--|
| 종합평가점수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총 100점만점</li> <li>항목점수: 각 항목별 4점 만점(0~4점)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기본점수(20점) + 항목점수(160점) + 재해율(20점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p> |
| 우수단계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종합점수가 70점이상(100점 만점 기준)이고, 각 분야별 평가점수(환산점수)가 50점미만(100점 만점 기준)이 없는 경우</li> </ul>  |
| 평가항목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6개 분야 40개 항목</li> <li>A 체계구축(5), B 인식수준(6), C 조직문화(5), D 건강증진활동(12), E 환경관리(3), F 프로그램 운영(9)</li> <li>작업관련성 질환자 발생추이 등 재해율 관리는 별도 평가</li> </ul>               |

## 인증신청서 접수처

|     | 서울지역본부       | 부산지역본부       | 광주지역본부       | 중부지역본부       | 대구지역본부       | 대전지역본부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지역  | 서울, 강원       | 부산, 경남, 울산   | 광주, 전남·북, 제주 | 인천, 경기       | 대구, 경북       | 대전, 충남·북     |
| 전화  | 02.6711.2854 | 051.520.0584 | 062.949.8758 | 032.510.0531 | 053.609.0542 | 042.620.5633 |
| 담당자 | 주은선 과장       | 김윤희 과장       | 권수현 대리       | 김영미 부장       | 오경숙 과장       | 김성용 과장       |

\* 평가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본부 또는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  
홈페이지 접속경로: 안전보건공단 > 사업안내 > 신청 > 근로자건강증진 >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(<http://kosha.or.kr/board.do?meunId=8183>)

| 연번 | 확인사항          | 확인할 세부 내용  | 평가(0/1) |
|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|
| 1  | 인증 신청 자격요건 확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1년이상 추진하고 있는가?<br/>- 개시시점 확인방법<br/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공단에 기 제출한 “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” 접수일 또는 노·사의 확인을 받아 공단으로 송부한 “자체평가표”로 확인</li> </ul> </li> </ul>  |         |
| 2  | 자체평가표 작성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자체평가표 양식을 확보하였는가?<br/>- 별첨의 [인증항목별 평가기준] 포함</li> <li>• 평가자는 경영자측과 근로자측을 대표할 사람으로 각각구성하였는가?</li> <li>• 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였는가?</li> <li>• 자체평가결과 종합점수가 “우수”단계에 해당되는가?<br/>- 인증평가 결과, 우수단계는 70점이상인 경우에 한함</li> <li>• 인증평가를 받기 전, 인증 관련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가?<br/>-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, 지역본부 접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• 인증평가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을 파악 및 수집하고 있는가?<br/>- 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일체 및 면담 대상 관계자 현황 등</li> </ul> |         |
| 3  | 인증신청서 제출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증신청서와 자체평가표를 적정하게 작성하였는가?</li> <li>• 해당 서류에 관련자 서명, 날인이 적정한가?</li> </ul>   |         |
| 4  | 인증평가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평가반(지역본부)과 일정조율을 하였는가?</li> <li>• 평가관련 준비서류, 관계자 스케줄 등을 모두 확인하였는가?<br/>- 평가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일체 및 면담 대상 관계자 등</li> <li>• 평가결과, “실천”단계인 경우, 미흡한 사항 등이 조기에 개선이 가능한가?<br/>- 인증평가결과표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</li> </ul>   |         |
| 5  | 인증심사위원회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“우수”단계인 경우, 필요시 평가반에서 심사 상정자료 관련하여 정보(자료) 요청 시, 지원이 가능한가?<br/>- 인증여부는 심사위원회 심의·의결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.</li> </ul>  |         |
| 6  | 인증서 교부(수여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증으로 결정된 경우, 인증서 수여식 관련하여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/ul>  |         |
| 7  | 인증요건 유지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증 유효기간 (3년) 동안 인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,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  |         |
| 8  | 인증 연장 신청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(인증결정일로부터 3년)로부터 3개월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?</li> </ul>   |         |
| 9  | 인증 연장평가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증 연장평가와 관련하여 절차는 신규인증 절차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.</li> </ul>  |         |